

「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

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지원 필요.
- 대상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 요원에게 알려 대처하는 사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
- 추진근거
 - 노인복지법 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
 -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
 - 보건복지부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
- 위탁사무: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전반
 - 지원 대상자 요건 심사·선정·관리, 대책 장비 설치·관리
 - 응급관리요원 채용·관리, 응급사항 발생 시 현장 확인 등

○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2년간 * 2024. 1. ~ 2025. 12.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○ 수행기관 현황 * 2023년 기준

기관명	소재지	서비스 대상자	응급관리요원	비 고
은빛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	송원서로8길 57, 3층	769명	2명	23년 내 목표인원 : 1,000명

○ 소요예산: 연 187,171천원 정도(군 47%, 도 14%, 시 39%)

4. 참고사항

○ 추진근거: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2항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,
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
※ 보건복지부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라 기관
위탁, 대상자 선정, 서비스 제공, 응급관리요원 관리, 대책장비 설치·
관리,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

○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『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』 심의 결과 “적정”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‘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’을 민간에
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
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처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전문적
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
판단됨.